



2021학년도 중앙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1 모집 인원 (남 10학급)

모집 구분	모집 전형	모집 정원	비 고
정원 내	일반전형	262명	
	체육특기자 전형	18명	야구부 9명, 축구부 9명
	사회통합전형	70명	모집정원의 20%
	소 계(A)	350명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10명	모집정원의 3% 이내
	고입특례대상자전형	7명	모집정원의 2% 이내
	소 계(B)	17명	
총 모집인원(A+B)		367명	

- 1) 지원자는 일반전형, 체육특기자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중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2) 사회통합전형은 모집 정원의 20%(70명)를 의무적으로 선발함. (일반전형 선발 시 동시에 선발함.)
- 3)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4)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위 '2)~4)'항의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5)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 중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한 지역(경남, 제주, 세종) 소재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및 졸업예정자

나.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해당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일반전형	공통자격을 갖춘 자						
체육특기자전형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야구 또는 축구 종목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						
정원 내	<table border="1"> <tr> <td>기회균등전형</td> <td> 60%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비지원확인서'를 제출한 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td> <td>※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td> </tr> <tr> <td>사회통합전형</td> <td> 1순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 </td> <td>※2020년 가구원 중 위소득 160% 이하</td> </tr> </table>	기회균등전형	60%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비지원확인서'를 제출한 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사회통합전형	1순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	※2020년 가구원 중 위소득 160% 이하
	기회균등전형	60% 우선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구 차차상위계층)로 '교육비지원확인서'를 제출한 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사회통합전형	1순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	※2020년 가구원 중 위소득 160% 이하					
정원 외	<table border="1"> <tr> <td>보훈자자녀전형</td> <t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td> </tr> <tr> <td>고입특례대상자전형</td> <td>○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td> </tr> </table>	보훈자자녀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고입특례대상자전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보훈자자녀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고입특례대상자전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0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기회균등전형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됨. 동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회다양성 전형의 한부모 가정(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자녀와는 구분

나. 기회균등전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증빙 서류

-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제출
-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

※ 위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다. 학교장 추천대상자 추천 요건

-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라. 기회균등전형 **보호자 자녀**의 조건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3조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안내 사항

<p>■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교육비지원 관련 안내</p> <p>2021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1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p>
--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가. 사회다양성전형 공통사항 : 2020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 1)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재산세 **납부금액(연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60,546	160,865	162,883	538,050
3인	208,444	219,531	212,215	856,320
4인	253,956	274,444	260,770	1,193,760
5인	311,116	333,411	326,561	1,530,960
6인	368,580	393,349	402,261	1,868,400
7인	402,261	426,790	437,059	2,207,760
8인	471,545	495,914	519,517	2,546,880
9인	519,517	544,044	602,065	2,886,000
10인	602,065	617,910	767,816	3,225,3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참고자료1**, **참고자료2** 참고)

나. 다문화가정

- 1)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더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수급권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라.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개정으로 '장애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19.7.1.부터 용어 변경

마.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3. 고입특례대상자(정원 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4. 사회통합전형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지원 자격에 대한 심의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중복 실시함.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보호자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대상자로서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단계] 심의(자문) 제외 가능

※ 중학교에서 위 [4단계]까지의 절차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지원자도 지원 자격 여부를 본교에서 재심의를하며, 그 결과에 따라 탈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가. 1차 제출 서류 (지원자 전원)

- 1) 제출 시기 : 2020.12. 9.(수) ~ 12.11.(금) (업무시간 09:00~17:00)
- 2) 제출 서류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중학교장 확인(직인 날인)) ○ 주민등록등본 1부(단, 일반전형 지원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관할 재외 한국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이하 검정고시 합격자)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또는 합격증 사본(합격증 사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원본대조필 확인) 1부																						
일반전형	○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사항 없음.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증명서(출신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1부																						
사회통합전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 2021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table border="1"> <tr> <td>국민기초생활수급(원)자</td> <td>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td> </tr> <tr> <td>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td> <td>한부모가족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 </tr> <tr> <td rowspan="5">법정차상위대상자</td> <td>차상위자할 대상자</td> <td>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 </tr> <tr> <td>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td> <td>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td> </tr> <tr> <td>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td> <td>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 </tr> <tr> <td>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td> <td>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 </tr> <tr> <td>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td> <td>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 </tr> <tr> <td>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td> <td> <table border="1"> <tr> <td>기준중위소득 50%이하</td> <td>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 </tr> <tr> <td>기준중위소득 60% 이하</td> <td>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td> </tr> </table> </td> </tr> <tr> <td>학교장 추천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해당 중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 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 명세서, </td> </tr> </table>	국민기초생활수급(원)자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자할 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table border="1"> <tr> <td>기준중위소득 50%이하</td> <td>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 </tr> <tr> <td>기준중위소득 60% 이하</td> <td>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td> </tr> </table>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	학교장 추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원)자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자할 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table border="1"> <tr> <td>기준중위소득 50%이하</td> <td>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td> </tr> <tr> <td>기준중위소득 60% 이하</td> <td>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td> </tr> </table>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																						
학교장 추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해당 중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 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 명세서, 																						
사회통합전형	<table border="1"> <tr> <td rowspan="2">기회균등전형</td> <td>60% 우선 선발</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의 자녀</td>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tr></table>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의 자녀																			
기회균등전형	60% 우선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의 자녀																				
	60% 우선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단, 만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사실 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 단,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제출 • 재직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 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table border="1"> <tr> <td>보훈자 자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관할 보훈지청) 1부 </td> </tr> <tr> <td rowspan="2">공통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td> <td>지역건강보험 가입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td> </tr> <tr> <td>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td> </tr> <tr> <td rowspan="10">사회통합전형</td> <td>다문화가정의 자녀</td> <td>•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td> </tr> <tr> <td>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td> <td>•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td> </tr> <tr> <td>특수교육대상자</td> <td>•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td> </tr> <tr> <td>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td> <td>•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단, 만18세 미만 아동에 한함</td> </tr> <tr> <td>1순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td> </tr> <tr> <td>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td> <td>•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td> </tr> <tr> <td>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td> <td>•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td> </tr> <tr> <td>2순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정 자녀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군인 재해준부사관 이하 경찰 자녀(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소방위 이하) </td> </tr> <tr> <td>재직증명서 1부</td> <td>• 재직증명서 1부</td> </tr> <tr> <td>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td> <td>•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td> </tr> </table>	보훈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관할 보훈지청) 1부 	공통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사회통합전형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단, 만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정 자녀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군인 재해준부사관 이하 경찰 자녀(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소방위 이하) 	재직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보훈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관할 보훈지청) 1부 																											
공통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으로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사회통합전형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단, 만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	•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정 자녀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군인 재해준부사관 이하 경찰 자녀(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소방위 이하) 																										
	재직증명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보훈자자녀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 2021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호지청) 1부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 2021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 특례 입학 대상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1부 : 경남, 제주 및 세종 출신 지원자만 제출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나. 2차 제출 서류 (2단계 면접대상자만 제출)

대상	제출시기	제출 서류
2단계 면접 대상자 (공통)	2020.12.16.(수) 00:00 ~ 12.21.(월)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및 저장) -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하며 마감 시간 이후 입력 및 수정 불가 - 배제 사항 기재 시 0점 또는 감점 처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목의 점수나 석차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또는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 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배제 사항을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함. - 대리 작성, 허위 작성 혹은 표절하였을 경우 감점,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유사도 검증시스템으로 검증 예정)
	2020.12.18.(금) ~ 12.21.(월) (업무시간 09: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험표 출력본 1부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지원자 사진 위에 중학교장 직인 날인) ※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2부(원본대조필) 2부 - 비교과 영역 작성 기준일(2020.11.20.(금))이후 출력 -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출력 옵션 중 '서술 방식 자사고 입시용' 탭을 선택하여 출력함 → 수상경력(4번 항목),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항목)과 중학교 3학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10번 항목 중 3학년 영역)은 제외하고 단면으로 출력 ※ 스테이플러로 철하지 말 것, 양면인쇄 하지 말 것

다. 추가 모집 시

- 입학원서 1부
- 각종 증빙 서류 등 1차 제출 서류 일체
- ※ 추가 모집 시에는 모든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전형 일정 및 원서 접수

가. 전형 일정

구분	일시	장소	유의 사항
온라인 입력 시험 운영	2020.12.4.(금) 09:00 ~ 12.8.(화) 24: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 원서를 입력하여 저장 가능
입학원서 온라인 접수 (전형료 온라인 결제)	2020.12.9.(수) 00:00 ~ 12.11.(금) 15: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 전형료 27,000원(추후 확정) 결제 (인터넷 원서 접수료 별도) ○ 이 기간에 전형료를 결제해야 원서 접수로 간주함.
1차 서류 제출 (지원자 전원)	2020.12.9.(수) ~ 12.11.(금) (업무 시간 09:00 ~ 17:00)	본교	○ 본교 방문 제출 ○ 입학원서, 각종 확인서 등에 학교장 직인을 날인 후 제출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 서류 제출
면접대상자 추첨 전형 (1단계)	2020.12.15.(화) 14:00	추후 안내	
2단계 면접대상자 발표	2020.12.15.(화) 17:00	본교 홈페이지	
2단계 면접 대상자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및 저장	2020.12.16.(수) 00:00 ~ 12.21.(월) 17:00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 마감 시간 이후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불가
2차 서류 제출 (면접 대상자)	2020.12.18.(금) ~ 12.21.(월) (업무 시간 09:00 ~ 17:00)	본교	○ 본교 방문 제출 ○ 서류(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포함) 미제출자는 자동 불합격 처리 ○ 면접 미실시할 경우 2차 제출 서류 없음.
면접 (2단계)	2020.12.29.(화)	추후 안내	○ 시간 및 장소 추후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21.1.4.(월)	본교 홈페이지	
추가 모집	원서 접수	2021.1.14.(목) ~ 1.15.(금) (업무 시간 09:00 ~ 17:00)	본교
	추첨 전형일	2021.1.18.(월)	본교
	합격자 발표	2021.1.20.(수)	본교 홈페이지
입학 신고 및 예비 소집	추후 공지		
등록금 납부 기간	2021.1.26.(화) ~ 1.28.(목)		

※ 학생부 출결 마감 기준일은 2020.11.20.(금)이며, 전형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전형 지원율이 110%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전형에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추첨(2020.12.15.(화))으로 예비합격자를 발표하며,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해당 전형의 지원 자격 적격 여부를 검증한 후 최종 합격자로 공고됨.

나. 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 접수 방법 및 절차

[모든 지원자]

- 본교 홈페이지 접속
- 팝업창 또는 입학 안내에 링크된 '원서 접수 바로가기' 클릭
- 원서 접수 사이트 회원 가입 (지원자 본인 명의로 가입)
- 입학원서 예비 입력 및 저장 시작 (2020.12.4.(금) 09:00~)
- 입학원서 입력 및 전형료 결제 (2020.12.9.(수) 00:00~2020.12.11.(금) 15:00)
- 입학원서, 각종서식 등 출력물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 직인 받음
- 입학원서, 기타 유형별 제출 서류를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 접수 불가) (2020.12.9.(수)~2020.12.11.(금) / 09:00~17:00)
- 면접, 추첨 실시 여부 확인 (2020.12.11.(금) 본교 홈페이지)
- 2단계 면접 대상으로 선발(1단계 합격) 여부 확인 (2020.12.15.(화) 17:00~)

[2단계 면접 대상자]

- 수험표 출력 및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시작 (2020.12.16.(수) 00:00~)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및 저장 완료 (2020.12.21.(월) 17:00까지, 이 시간 이후 자기소개서 입력 및 수정 불가)
- ※ 마감 시간 이후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자동 제출 처리됨
- 수험표 사진 위에 학교장 직인 날인, 학교생활기록부II 준비
- 본교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우편 접수 불가) (2020.12.18.(금)~2020.12.21.(월) / 09:00~17:00)

※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므로 실제 입학원서 교부 절차는 없음.

※ 지정된 서류 제출 기간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므로, 반드시 온라인 원서 접수 전에 지원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특히 사회통합전형, 보훈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의 경우 지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온라인 접수 후 또는 서류 제출 후에도 불합격 처리됨

2) 온라인 원서 접수 및 전형료 결제

- 기간 : 2020.12.9.(수) 00:00 ~ 12.11.(금) 15:00
- 전형료 : 입학원서 입력 시 전형료 27,000원을 온라인 결제하여야 함. (인터넷 원서 접수료 별도) 단, 2차 면접 대상자가 아닐 경우 20,000원 중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 예정임

※ 온라인 접수 및 전형료 결제가 끝나고 접수번호가 생성되면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됨 (이 경우 1단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3) 1차 서류 제출

- 기간 : 2020.12.9.(수) ~ 12.11.(금) (업무시간 09:00~17:00)
- 제출 서류 : 원서 및 기타 구비 서류(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II, 수험표를 제외한 모든 서류)
- 제출 장소 : 본교 입학접수처 (본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온라인으로 원서를 제출한 지원자는 1차 제출 서류를 본교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날인이 누락된 경우,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4)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및 저장(면접 대상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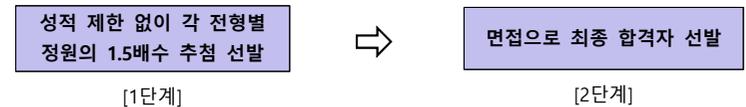
- 면접 대상자는 자기소개서를 2020.12.21.(월) 17:00까지 온라인 입력 및 저장하여야 하며, 이 시간 이후 자기소개서 입력, 수정이 불가하니 주의하기 바람.

5) 2차 서류 제출 (면접 대상자에 한함)

- 기간 : 2020.12.18.(금) ~ 12.21.(월) (업무시간 09:00~17:00)
- 제출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II, 수험표*
- * 서류 접수 시 수험표는 본인 확인 후 돌려주며 지원자는 면접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함
- 제출 장소 : 본교 입학접수처 (본교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면접 대상자는 학교생활기록부II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2차 서류(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 포함)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됨

5 전형 방법 및 사정 기준

가. 자기주도학습전형 절차



1) 1단계 선발 인원

모집 구분	모집 전형	모집 정원	1단계 추첨 선발 인원
정원 내	일반전형	262명	393명
	체육특기자전형	18명	야구 13명, 축구 13명
	사회통합전형	70명	105명
소 계		350명	524명
정원 외	보훈자녀전형	10명	15명
	고입특례대상자전형	7명	10명
소 계		17명	25명

※ 사회통합전형은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므로 사회통합전형의 1단계 추첨 선발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율에 따른 선발 방식 (추첨 및 면접 여부)

○ 일반전형

지원율	추첨 여부	선발 방식
100% 이하인 경우	X	지원자 전원 최종 합격
100% 초과 ~ 110% 이하인 경우	O	면접 생략 추첨
11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X	추첨 생략 면접
150% 초과한 경우	O	1.5 배수 추첨 후 면접

- 사회통합전형, 보훈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의 선발 방식(추첨 및 면접 여부)은 해당 전형의 지원율에 상관없이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함. ('면접 생략 추첨', '추첨 생략 면접', '추첨 후 면접')
- 일반전형에서 면접이 생략될 경우 사회통합전형, 보훈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은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면접 생략 추첨'으로 선발함.

나. 면접

영역별 평가 요소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참고 자료
자기주도학습영역 (꿈과 끼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 학습과정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목표 설정·계획 후 학습 실행까지의 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 진로계획 및 지원 동기 본교의 건학이념(학교 특성)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100점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4, 7번 항목과 10번 항목 중 3학년 영역 제외)
인성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기재된 봉사·체험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에서의 활동 실적 등 ■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중학교에서의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전형요소로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핵심 인성요소 평가
 -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입학전형 금지, 학교별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전형 금지
- ➔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입학전형영향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다.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의 각 항목을 모두 포함하되 영역 구분 없이 1,200자(띄어쓰기 제외)이내로 작성
- 2)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본교의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통해 표절이 확인될 경우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 대리 작성, 허위작성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3) 본문에 각종 인증 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배제사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 4) 지원자 본인의 인적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면접 배점의 10% 감점**

<자기소개서 작성 시 배제사항>

- TOEFL, TOEIC, TEPS, TESL, TOSEL,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 0점 처리
- 교과목의 점수·석차
 - ⇒ 0점 처리
-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 0점 처리
- 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 예) 부모 또는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 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 면접 배점의 10% 감점 처리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내용
 - ⇒ 면접 배점의 10% 감점 처리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 0점 처리
- 영어 성적이 100점이 되어 전교 1등이 되었습니다.
 - ⇒ 0점 처리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 0점 처리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 0점 처리
- □□지검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 면접 배점의 10% 감점 처리
- △△방송반에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 ⇒ 면접 배점의 10% 감점 처리 (△△이 출신중학교명을 암시하는 경우)

6 전형 유형별 선발 방법

가. 일반전형

본교의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지원율에 따라 추첨 또는 면접으로 선발

나. 사회통합전형

- 1)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면접 실시 여부는 사회통합전형 지원율에 상관없이 일반전형 지원율에 따라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함. (‘면접 생략 추첨’, ‘추첨 생략 면접’, ‘추첨 후 면접’))

◆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3단계 : 2단계 미충원 시에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중에서 선발

※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유형은 지원 자격 참조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 일반전형이 지원을 미달로 자동합격임에도 사회통합전형이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 생략 추첨’으로 선발함.

- 2) 교육지원대상자(정원 외)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타 유형의 기회균등전형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
- 3) 다자녀(3인 이상)가정 자녀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30%(21명) 이내로 함.

다. 체육특기자전형

체육특기자전형 종목별 지원율에 따라 일반전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발(‘면접 생략 추첨’, ‘추첨 생략 면접’, ‘추첨 후 면접’)

라.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일반전형 지원율에 따라 일반전형 선발 방식으로 선발(‘면접 생략 추첨’, ‘추첨 생략 면접’, ‘추첨 후 면접’)

※ 일반전형이 지원을 미달로 자동합격임에도 보훈자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이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 생략 추첨’으로 선발함

마. 동점자 우선 선발 순위

- 1순위 : 면접 평가 중 “자기주도학습영역” 점수가 높은 학생
 - 2순위 : 면접 평가 중 “인성 영역” 점수가 높은 학생
 - 3순위 : 봉사활동 시수가 많은 학생(단, 3학년 봉사활동 시간은 제외)
- ※ 3순위 이후 동점자 발생 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

7 합격자 배제 조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을 배제한다.

- 가.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나. 전기고(영재학교 제외)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지원자가 본교에 지원하는 경우 등 이종으로 지원하는 자

8 합격자 발표

- 가. 합격자 발표 : 2021.1.4.(월) 본교 홈페이지
 - 나. 합격자 예비소집 : 추후 안내
 - 다. 합격자 등록금 납부 기간 : 2021.1.26.(화) ~ 1.28.(목)
-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가. 교육비 지원

- 1) 2021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2021년에 시행되는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함.
※ 단,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 2) 반드시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다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지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 불가함.
- 3) 참고: 「2020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 안내
○ 학비 지원 : 법정 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입학전형	구 분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기회균등전형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교육청 전액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96,800원 이내)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교육청 지원 (일반고 수준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96,800원 이내)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지원항목 및 자격

지원 항목	입학 전형	지원 자격	대상 확인
[총 5종]	공 통 (입학전형 무관)	법 정 저 소 득 자 격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① 소규모태마형 교육여행비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② 수련활동비			3. 법정차상위대상자
③ 교복비	기회균등 전형 입학자	소 득 인 정 액 기 준	4. 중위소득 50%이하
④ 앨범비	공 통 (입학전형 무관)	기 타	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
⑤ 기숙사비			

- 항목별 지원 단가

지원 항목	단가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1인당 400,000원 이내 실비
2. 수련활동비	1인당 140,000원 이내 실비
3. 교복비(신입생)	1인당 300,000원 이내 실비
4. 앨범비(3학년)	1인당 50,000원 이내 실비
5. 기숙사비	학교별 순수 기숙사비 50% + 조·석식비 전액

※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은 학기 중 법정 저소득자격을 상실되더라도 해당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나.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구 분	프로그램 내용(제목)
학교 생활 적응 프로그램	1. 회복탄력성향상프로그램 운영 전문상담교사가 학생 개인에 적합한 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인별, 소수 집단별로 정서 안정, 적응력 향상, 자존감 향상, 대인 관계 능력 향상 등을 위한 활동 실시
	2. 학습효율성향상프로그램 운영 전문상담교사가 학습 종합 진단 검사, 학습 동기 향상, 집중력 향상, 시간 관리 능력 증진, 기억력 향상, 시험 관리, 시험 불안 등에 대한 활동 실시
교과 프로그램	3. 기숙사 선발 시 일정 비율 우선 선발 및 기숙사비 일부 지원
	4. 성적우수학생 특별학습지원장학금 지급
학교 생활 적응 프로그램	5. 대학생 선배 질문방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본교 졸업생 선배가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멘토링을 기숙사 질문방에서 활동하며, 진학·학습·인생에 대한 조언도 제공함.
	6. 각종 체험 및 학습 활동 지원 - 소규모테마형교육활동비 지원 - 인터넷수강권 지원 - 외부초청 강사비 지원 - 고려대 예비대학 캠프 지원 학생부종합전형, 자기소개서작성법, 학과별체험, 본교 졸업생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예비대학 캠프에 우선 선발 및 참가비 지원
교과 프로그램	1. 교사멘토링프로그램 운영 본교 멘토 교사와 멘티 학생 간에 결연, 소수 인원으로 구성하여 수학, 영어, 예체능 등 교과 및 인생 상담까지 멘토링 활동
	2. 기초학력향상반 운영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을 위한 국어, 수학, 영어, 학습법 등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

	3. 자기주도학습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자기주도학습컨설팅 자기주도학습 강의, 플래너 지도, 학업 동기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조절력 관리, 인강활용 관리 등을 통하여 학습자 신감을 회복하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진로에 대한 안내 및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 상기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장학금 지원

○ 교내 장학금 관련 내용은 학교 홍보물에 자세하게 소개함.

10 기타 유의 사항

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436호, 시행 2020.1.9.) 제2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는 신입생 입학 원서 접수 10일 이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함.

나. 이종 지원 금지

- 전기고(영재학교 제외) 합격자, 타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지원자는 본교에 지원 할 수 없음.
 - 이종 지원 금지는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도 적용됨.
- 다. 2단계 면접 대상자는 **학교생활기록부II**와 **자기소개서(온라인 제출)**를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제출하고, 면접에 반드시 응시해야 함. 자기소개서 온라인 제출이나 서류 제출 등의 과정 중 일부라도 누락할 경우 서류 미비 또는 미응시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사회통합전형, 보호자 자녀전형, 고입특례대상자전형 지원자가 **미달인 경우에도 일반전형 지원율에 따라 '추첨 후 면접', 또는 '추첨 생략 면접'으로 결정되면**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서류 제출, 면접 등의 모든 과정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 중 일부라도 누락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 라. 2단계 면접 대상자는 면접 당일 입실 완료 시간 전에 지정된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입실 완료 시간 이후 도착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불합격 처리됨.
- 마. 면접 당일 지원자는 교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을 착용하며 학교 배치 등으로 본인의 출신 학교를 드러내서는 안 됨. 사복 착용 시 경제적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바. 면접 당일 지원자는 통신, 촬영, 녹음, 녹화, 재생 장치 등 일체의 전자 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본교 진행 요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소지하고 있는 자는 부정행위로 간주함.
- 사. 면접 당일 본교 진행 요원 또는 면접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퇴실 시간 전에 허가 없이 퇴실하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불필요한 접촉이나 대화를 하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함.
- 아. 불법, 부정행위 및 기타 부정행위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자는 입학한 후에도 합격 및 입학을 취소함.
- 자. 지원자는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을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 하여야 함.
- 차.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됨.
- 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타.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및 홍보교류부에 문의

<입학관련 문의>
 (우)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64 (계동)
 홈페이지 : www.choongang.hs.kr/
 대표전화 ☎ 02)742-1321, FAX 02)745-6322
 홍보교류부 ☎ 02)742-1321(내선 232, 230)

참고 자료 1 **가구원수·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단,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를 가구원 수 산정 시 포함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하여 합산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할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참고 자료 2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 기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근 거

- 2020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송부(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2492, 2019.12.12.)
- 교육부-시도교육청 고입업무 협약체 협의회 결과 일련(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4451, 2020.3.9.)
- 가구원수별 소득에 따른 재산세 연간 재산세 산출세액 제출(서울특별시 세무과-7770, 2020.3.31.)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기준을 적용
 - ※ 2020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하여 합산(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금액 적용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60,546	160,865	162,883	538,050
3인	208,444	219,531	212,215	856,320
4인	253,956	274,444	260,770	1,193,760
5인	311,116	333,411	326,561	1,530,960
6인	368,580	393,349	402,261	1,868,400
7인	402,261	426,790	437,059	2,207,760
8인	471,545	495,914	519,517	2,546,880
9인	519,517	544,044	602,065	2,886,000
10인	602,065	617,910	767,816	3,225,360

※ 「20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19.12.) 및 서울특별시 재산세 납부금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부금액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 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재산세는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미포함

참고 자료 3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정 범위

구분	순위	지정 대상자	비고
기회균등전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보훈자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 과학계고(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예술계고(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서울미술고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이 아닌 별도 전형계획에 의거 전체 모집 인원의 2~3%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도사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사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사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 자녀
	2순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 환경미화원 자녀(사·도 또는 군·구 소속 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 ○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보훈자 자녀전형(정원 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학비 면제 대상

* 지원 당시 소속 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참고 자료 4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동주민센터	
기회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소득50% 이하	기준중위소득50% 이하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
	기준중위소득60% 이하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확인서	학교(교육청)
	학교장추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입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서,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곳		
보훈자 자녀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사회다양성전형	공통 (가7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동주민센터
	1순위	다문화가정 자녀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해당서류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발급기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 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 단,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제출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 (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 (경위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위 이하)		○ 재직증명서 1부 ○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정원외	보훈자 자녀 전형	국가 유공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 ~ 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로 통보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제출자)는 정원의 보훈자 자녀 전형으로 별개 사항임

[붙임1]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전형
학교장 확인서

발급 번호 2020 -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출신학교 () 중학교 ()년 2월 (졸업 / 졸업예정)						
() 지역 ()년 ()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전형 유형			순위	지원 자격		
정원 내	사회 통합 전형	기회균등전형		유형 ()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유형 (), 가구원수 (인)	
				2순위	유형 (), 가구원수 (인)	
정원 외	보훈자 자녀전형			교육지원대상자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호 ()목 대상자		
위 학생을 2021학년도 고입 (사회통합, 보훈자 자녀, 특례대상자) 전형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 중학교장 (직인)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인)' 으로 수정						
중앙고등학교장 귀하						

- ※ 발급 번호 : 중학교별로 확인서를 발급한 연번호 기재
- ※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출신학교'란에 '검정고시' 합격 지역 및 연월 기재, 확인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임
- ※ 지원 유형
 - 기회균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기재
 - 사회다양성전형 : () 안에 해당 지원 자격 및 가구원수 기재
 - 보훈자 자녀전형 : 정원 외 교육지원대상자의 경우 ()에 'O' 표시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는 기회균등 전형에 기재)
 - 고입 특례대상자전형 : ()에 『서울특별시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통보 결과 기재

[붙임4] * 입학원서 서식은 참고용으로만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해당 부분을 입력한 후 최종 출력물을 제출해야 함. 사진도 별도로 부착하지 않고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원서와 수험표에 자동으로 인쇄됨.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번호			수험번호	* 추후 면접 시 본교에서 부여함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
	주소	우편번호:		보호자 휴대전화 ☎	
				출신중학교 ☎	
학력	년 월 중학교 학년 반 번 [졸업예정() · 졸업()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				
중학교 주소	우편번호:				
전형 구분		사회통합전형 유형			
담당교사 확인	()학년 ()반 담당교사 ()인				
<p>위 학생은 2021학년도 귀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p> <p>2020년 월 일</p> <p>보호자: (인)</p> <p>지원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고등학교장 귀하</p> <p>위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며, 위 학생이 귀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추천합니다.</p> <p>202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중학교장 (직인)</p> <p>*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사진에도 날인)</p>					

[붙임5] * 자기소개서 양식은 참고용으로만 공개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해당 부분을 입력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중앙고등학교 2021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자기소개서

접수번호	
수험번호	* 추후 면접 시 본교에서 부여함

지원자 기재 사항

성명 _____ 성별 _____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전화번호: _____ 휴대전화번호: _____

2020년 월 일

중앙고등학교장 귀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는 평가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기주도학습 과정, 건학이념과 연계한 지원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 진로계획, 인성영역 활동 실적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을 기술하십시오.
* 자기소개서의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본문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과목의 점수·석차,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실적, 자격증, 영재 교육 및 수료 여부 (우회적·간접적 기재 포함) 등은 기재 시 0점 처리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지원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암시하는 내용 등은 기재 시 **면접 배점의 10%** 감점 처리되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 본문은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하며,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200자 이내이어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를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완료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기간 종료 후에는 입력 및 수정이 절대 불가하니, 이 기간 중에 충분한 검토 및 입력, 저장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입학 전형 및 입학 후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관리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2페이지 중 2페이지>

□ 나의 꿈과 끼, 인성(1,200자 이내)

<p>▶자기주도학습영역(꿈과 끼 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 학습과정 :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목표 설정·계획 후 학습 실행까지의 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 ■ 진로계획 및 지원 동기 : 본교의 건학이념과 연계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계획과 진로 계획
<p>▶인성영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 봉사·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존중, 규칙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에서의 활동 실적 등 ■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 중학교에서의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p>※ 항목별 분량 지정은 없으나, 위의 항목이 모두 포함되도록 서술해야 함.</p>

(※ 이 양식은 출력용 건본입니다.
자기소개서 본문은 인터넷으로 입력·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6]

입학원서 (1차 서류) 접수증	
접수번호	
성 명	
<p>2021학년도 중앙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원서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p> <p>2020년 12월 일</p> <p>중앙고등학교장</p>	

절취선

1차 서류 접수 현황 (학교 보관용)	
접수번호	
성 명	
출신중학교	
전형 구분	
사회통합전형 유형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보호자 휴대전화
	출신중학교
1차 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	
2.	
3.	
4.	
5.	
6.	
7.	
8.	
9.	
10.	
※ 2. ~ 10.에는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직접 기재하세요.	

[붙임7]

수험표	
접수번호	
수험번호	※ 추후 면접 시 본교에서 부여함
성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사진 (3cm×4cm) 최근 3개월 이내</p> </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 5px auto;"> <p>출신중학교 직인</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중앙고등학교장</p>	

※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날인

2차 서류 접수증	
접수번호	
성명	
<p>위 지원자의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2차 서류를 위와 같이 접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12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중앙고등학교장</p>	

절취선

2차 서류 접수 현황 (학교 보관용)	
접수번호	
성명	
출신중학교	
전형 구분	
사회통합전형 유형	
연락처	본인 휴대전화
	보호자 휴대전화
	출신중학교
제출 서류	
1. 학교생활기록부Ⅱ 2부	

[붙임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안내

본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91조의3, 제97조, 제106조의3 및 본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지원자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연락처, 주소, 학력, 출결사항
- 보호자 :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생년월일, 건강보험료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 출입국사실**

* 사회통합전형 해당자에 한함, **고입특례대상자전형 해당자에 한함

(목적) 신입생 선발 및 입학 관리 업무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6조, 제91조의3, 제97조, 제106조의3

2. 민감정보 수집·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학생 및 학부모 장애 정보(사회통합전형 중 해당자에 한함)

(목적) 신입생 선발 전형 중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확인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3. 제3자 제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 기관) 출신 중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받는 기관의 목적) 지원 자격·지원 결격 사유 조회, 이중지원 확인,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증, 코로나19 관리대상자(확진자, 자가격리대상자) 확인

(제공 항목) 학생 이름, 학년, 반, 번호, 성별, 생년월일, 출신 중학교명, 지원 고등학교명, 합격·불합격 여부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 제106조의3